

2023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3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2년 10월 5일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12일

3. 제안이유

-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450백만 원

- 출연목적

-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지정에 따라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해 육성사업(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
- 공공 연구성과 확산, 기술 사업화 촉진을 통한 창업지원 및 투자연계로 기업성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

- 출연내역 :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1식(450백만 원)

※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①-③ ‘출연 사업계획서’ 참조

- 기대효과
 -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 R&D 역량강화 및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R&D - 사업화 - 재투자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음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 1,004백만 원

- 출연목적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역 R&D 거점기관으로서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통한 신성장산업 발굴·기획·육성 기능 수행
 - 남부권 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운영(신규공약사업)
- 출연내역
 - R&D 인력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1식(804백만 원)
 -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운영” (신규·공약) 1식(200백만 원)

※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2]-③-1, [2]-③-2 ‘출연 사업계획서’ 참조
- 기대효과
 - 지역 R&D 거점기관으로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지역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

가. 제출배경

-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¹⁾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대상기관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출연계획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²⁾에 따른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는 2019년 8월에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후 매년 R&D 기술사업화 지원,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등 특구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출연금 450백만 원은 2022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국비 대비 지방비 대응 비율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50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다.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출연계획안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³⁾에 따라 우수 R&D 인력 지원 및 안정적인 기관 운영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남부권 혁신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특히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출연은 신규사업으로 남부 3군 기업지원 및 신산업 발굴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혁신성장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한 출연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의 총 소요예산, 항목별 세부 집행계획과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라. 종합의견

- 이 출연계획안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에 대한 지방비 대응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기관 운영비와 신규로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기관 분산배치를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증액사유와 신규사업의 재원조달 방법, 사업내용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2. 31.] [충청북도조례 제4481호, 2020. 12. 31., 전부개정] 제6조(재정지원 및 공유재산의 대부)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과기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과기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